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 증가와 관세 행정의 개선 방향

조홍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내구성 또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입 소비재가 국내 산업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환경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수입품은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만큼, 수입품과 관련된 국내 시장 및 소비자의 보호는 관세 행정의 개선으로 많은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관세 행정의 개선 방향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충분히 감안하되, 기존 WTO체제에서의 무역 규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규제 및 향후 전개되는 뉴라운드의 내용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내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를 통하여 관세 행정 개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재 수입 급증세

금년 들어 경기 수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나 10월 말까지 19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증가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수출 주력 제품의 수출 부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수입 증가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 해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0월 말 현재 수출 증가율은 4.6%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은 13.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10
수출	766.3(6.6)	822.4(7.3)	960.1(16.8)	1,250.6(30.3)	1,065.1(4.6)
수입	817.8(0.3)	838.0(2.5)	1,023.5(22.1)	1,351.2(32.0)	1,259.0(13.0)
무역수지	51.5	-15.6	-63.4	-100.6	-193.9

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임.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통상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최근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고급화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소비재 수입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의 경우에는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 증가율에 비해 낮았으나, 1996년 들어서는 원자재(10.4%), 자본재(7.2%)보다 높은 20.3%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수입 구조의 변화 추이

	1992	1993	1994	1995	1996. 1~9
소비재	10.5(6.1)	10.5(2.5)	10.7(24.6)	10.3(27.8)	11.3(20.3)
원자재	52.1(-1.7)	53.0(4.2)	49.8(14.8)	50.1(32.6)	49.8(10.4)
자본재	37.4(1.6)	36.5(0.7)	39.5(32.1)	39.6(32.5)	38.9(7.2)
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소비재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의류, 화장품, 운동 용구 등 사치성 비내구재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내구 소비재가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에는 10.2%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 17.3%, 1996년 9월 현재 23.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치성 비내구재의 수입 증가세는 수입 자유화의 확대와 유통 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크게 완화된 데다가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 주요 소비재 수입 추이

	1992	1993	1994	1995	1996. 1~9
총소비재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의류	21.1(13.1)	20.5(0.6)	17.4(5.6)	17.5(28.9)	19.9(37.9)
내구 소비재	35.9(2.7)	37.7(7.5)	36.7(21.5)	35.7(24.1)	33.2(11.9)
비내구 소비재	10.1(16.0)	12.1(20.7)	14.7(53.3)	17.3(50.3)	18.6(31.4)
직접 소비재	32.9(3.7)	29.7(-7.4)	31.2(20.8)	29.5(20.8)	28.3(13.8)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비내구 소비재의 수입, 특히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증가 현상은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도 두드러지고 있다.¹⁾ 1990년 이후 우리의 의류 수입은 연평균 48%를 기록하여 일본의 8.3%, 대만의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²⁾ 이런 현상은 1996년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사치성 소비재인 담배, 모피 의류, 화장품, 위스키, 보석류 등의 수입이 일본과 대만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는 증가율

1)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국제 비교와 관련한 자료는 산업연구원, 「실물경제」, 1996. 10.23, pp. 9~10 참조.

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고 172%(보석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재 수입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저가 제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소비재 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외채를 증가시키고, 국내 업체의 생산 기반을 잠식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입 증가, 특히 소비재의 수입 증가 추세와 함께 수입품의 종류와 속성이 국내 생산품에 적용되는 산업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그리고 환경 보호 정책 체계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국내 시장의 급속한 개방과 함께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거시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수입품,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 소비재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비재 수입에 관한 관세 행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수입과 관세 행정

모든 수입품은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를 밟아 국내에 수입된다.²⁾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을 관장하는 관세 행정의 목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화물의 흐름을 신속히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관에서의 간섭은 최소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WTO체제 하에서 불필요한 세관의 간섭은 무역 마찰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세관 통관 절차는 공항 및 항만의 화물 적재를 유발함은 물론, 물류 비용의 상승을 우발하여 유관 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는 화물의 국경간 이동 과정에서 재정 수입의 확보, 공정 무역 촉진 여부의 감시, 사회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관에 의한 간섭은 불가피해진다. 정부에서 양허하고 WT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인정된 관세율에 따라 각종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재정 수입의 확충을 기함은 물론, 수입품의 품질과 종류를 규제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 품질,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관세 행정의 의무이다. 결국, 관세 행정이란 화물 통관의 ‘원활화(facilitation)’와 관세법과 유관 법규의 ‘적용(enforcement)’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세 행정이란 이와 같이 일견 상충

2) 대표적인 사치성 소비재인 모피 의류의 경우, 한국은 동기간에 24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일본 73%, 대만 35%의 증가율과 대조를 이룸.

3) 일부 수입품은 세관 라인(line), 또는 관세 라인(line)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되기도 함. 해외에서 전조된 선박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임. 그러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은 거의 예외없이 세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음.

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잡힌 행정을 펼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 행정의 기본 정책 목표를 감안할 때, 관세 행정 또는 통관 절차의 간소화(simplicity)와 관세 행정 추진시 관련 법규 적용 대상의 선별 기능(selectivity)의 제고에 행정 개선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⁴⁾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세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흐름을 정체시키는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에서의 행정 개선은 수입 절차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제출 서류의 축소 정비, 무역 업무 처리의 자동화·전산화(EDI),⁵⁾ 관련 절차의 통폐합이 주된 내용이다. 선별 기능의 제고는 증가하는 처리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수입품의 종류별로 국내 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위험도가 높은(high-risk)’ 상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사 능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행정 개선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

WTO의 출범과 관세 행정의 개선⁷⁾

UR의 타결로 WTO가 출범한 이래 우리의 관세 행정은 양허 관세율의 정착과 WTO 규범 내에서의 비관세 장벽 제거라는 차원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다. 아울러 관세 행정 상의 ‘원활화’ 또는 ‘단순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다. UR 타결 직후인 1993년 12월부터 UR 협정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1995년 12월 말 현재 총 24 개 법률을 정비하였다.⁸⁾ 그 가운데 수입 절차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 상의 수입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관세 인하와 관련하여 평균 관세율을 1984년의 21.9%에서 1994년에는 7.9%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1995년 현재 원자재에 대해서는 1~3%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4) 박진현, “關稅行政基本方向 5S's”, 「월간 관세」, 1996. 5, pp. 36~45 참조.

5) Electronic Data Interchange(문서의 전자화) : 각종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표준화·전산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일컬으며, ‘서류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 시대를 선도하는 사무 혁명임.

6) 미국과 유럽의 세관에서는 주로 위험도가 높은 부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라면 밀수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거나 환경, 안전 등의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7)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산업부, 「'96 한국무역정책토론회의 종합보고서」, 1996.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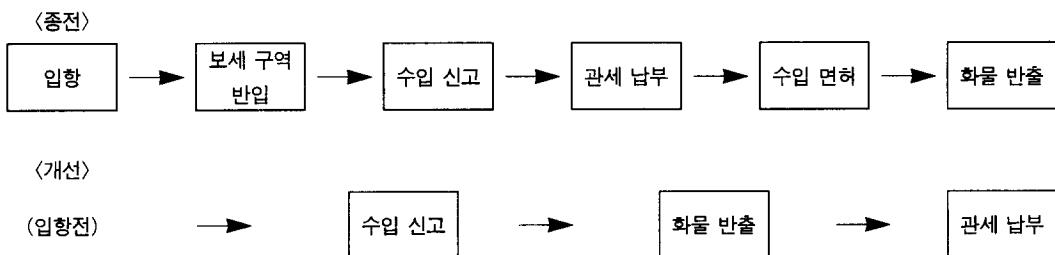
8) 개정된 법률은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산림법, 양곡관리법, 인삼사업법,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법, 잡업법, 축산법, 가축진염병예방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종자산업법이고,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외무역법,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세무사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등임.

〈표 4〉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국제 비교

	한국	미국	EU	일본	(%)
의류	8	3.7~28.6	13.8	9~16	
작물	8	17	10.7	8~16	
모피 의류	8	5.8	5.5	20	
가죽 의류	8	4.7~6	6.4	12.2~19.5	

관세율 인하와 아울러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종전에는 수입 물품이 입항·하역된 후 보세 구역에 장치되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수입 물품이 보세 구역에 장치되기 전은 물론 입항 전에도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 구역에 장치되기 전에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보세 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통관 절차의 간소화



표준제도에 관한 개선은 주로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과의 일치성 제고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국가표준규격(KS)을 국제 표준 규격과 조화시키기 위해 ‘전기기기안정성인증제도(IECEE)’,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IECQ)’에 가입하였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운영하여 국내 시장의 유통 질서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수입제도도 WTO 협정에 따라 정비되었다. 기존에 비관세 조치가 취해졌던 품목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자유화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교역에 위생 검사 및 검역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입품검사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내외 공인 검사 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신선 과채류에 대한 신속검사제도 및 수입 식품 등의 사전신고제의 도입 등 일련의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및 통관에 필요

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였다.

향후 관세 행정의 개선 방향

이러한 관세 행정의 개선은 대체로 WTO 규범의 준수와 관세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왔다. 그 결과,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국내 시장의 보호,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세 행정의 개선은 위에서 소개된 기존의 개선 방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WTO체제 하에서 국내 기업이 공정한 룰에 따라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불공정 무역에 관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역 대상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 행정으로서 선진국 세관에서의 통상적인 기능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상표 부착, 수입 가격 조작, 수입 가격 폭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재반입명령(Recall)제’, 선별정밀검사, 수입가격적정여부검사,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Price) 과세와 같은 정책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뉴라운드의 전개를 감안한 행정 개선이다.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그린라운드는 물론, 향후 새로운 통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라운드(BR), 경쟁라운드(CR)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합당한 수입품검사제도를 정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경우 통상 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 및 선진국의 관련 제도의 변화 추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내 유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정책공조체제의 구축이다.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환경부, 법무부 등 통상 문제 및 수입 관세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관세 행정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P]**